

생명자원산업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적용범위) 장학금은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과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지침」에 따르되, 본 학과 성적우수장학금 및 기금조성장학금은 이 지침에 따른다. 단, 외국인유학생특별전형입학생 및 외국인교환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2조(장학금 수혜기간 및 제한) ①교내장학금은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등 학교에서 특별히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이어야 한다.

②신입생우수장학금 등 계속수혜대상(2개 학기 이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에 따른다.

③장학금은 재학연한 내에 수혜가능하며, 장학금합산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월보조장학금과 대가성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은 제외한다.

④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할 수 없다.

⑤성적우수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할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다.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예산 배정)

①기획과의 대학별 성적우수(A,B,C) 학비감면 배정내역에 따라 예산액을 배정한다.

②성적우수장학금은 1학기 40%, 2학기 60%로 배정하며, 1학기에는 1학년을 제외하고 배정한다.

③학과별 예산 배정액은 장학과의 예산배정기준(교육통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4학년은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및 졸업연기자를 제외한다.

제4조(학년별 성적우수장학금액 배정 및 지급) ①학과별 성적우수장학금 총 예산에서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②성적우수장학금은 A, B, C로 구분하며, 각각 수업료의 100%, 6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금에서 선 감면한다.

제4조(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 ①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평생지도교수 면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의 최소이수학점, 이수과목은 아래와 같다.

학년	최소이수 학점	최소평점 평균	평생지도 교수면담	이수 교과목	
1학년	18학점	2.5	○	1학기	창의적대학설계, 인간과 환경의 이해

				2학기	컴퓨팅사고와SW활용, communication english
2학년	17학점	2.5	○		
3학년	17학점	2.5	○		
4학년	12학점	2.5	○		

*최소이수학점은 '성적우수A,B,C장학생'선발 시 적용하는 기준이며, 이 외의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③어학성적제출 시 가산점부과

가. 가산점 부과 기준표(평점평균에 가산점을 부과)

가산점	0.05	0.1	0.13	0.15	0.18	0.2	0.25	0.3
TOEIC	200-499	500-549	550-599	600-649	650-699	700-750	750-799	800이상

외국어 종류	시험 종류		가산점	0.4점	0.4점	0.25점	0.15점	0.05점
영어	TOEFL	IBT	기준	101이상	86이상	69이상	52이상	52미만
		CBT	기준	253이상	227이상	193이상	150이상	150미만
		PBT	기준	607이상	567이상	537이상	467이상	467미만
	TEPS		기준	800이상	700이상	550이상	370이상	370미만
	OPIC		기준	1H이상	1M3	1M2	1M1	1L이하
	TOEIC SPEAKING		기준	160이상	150이상	130이상	100이상	100미만
일본어	JLPT		기준	1급	2급		3급	4급
	新JLPT		기준	N1	N2	N3	N4	N5
	JPT		기준	700이상	540이상	460이상	400이상	400미만
중국어	HSK		기준	9급이상	8급	7급	5~6급	4급이하
	新HSK		기준	6급		5급		4급이하

나.어학성적 제출기간 및 제출처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어학성적표를 학과사무실(S09-0201)로 제출

다.제출 시 유의사항

- ※ 1학년은 **1학기**만 교내 언어교육원 주관 **모의토익 성적 대체**가능
단, 2학기부터는 공인어학성적표만 인정
- ※ **2, 3, 4학년은 공인어학성적표만 인정 (※해당 학기 내 응시한 성적표만 인정)**
- ※ **제출기한 엄수**, 제출기한 이후로는 **절대 제출 불가**
- ※ 장학사정이 매 학기 이루어지므로 지난 학기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제5조(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 처리)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요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성적사정 석차 순위에 의해 선발하되, 동점자인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아니하여 등록금 선감면을 받지 못한 자
2. 해당학기 이수학점 총합이 많은 자
3. 어학성적 우수자 (점수별로 가산점을 부여)
4. 학과 활동 우수자 (학과장이 인정하는 학생활동 및 교내·외 수상자)

제6조(외부기관 장학생 추천) 외부기관의 장학생 추천은 당해 학기 성적 석차순위를 고려하고, 경제사정곤란자, 봉사활동실적 우수자, 대외활동 우수자 등 외부기관의 추천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 추천하되, 학생회 활동 등 학과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성적 등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학과기금조성 장학금) 학과기금조성장학금은 사용가능예산액을 고려하여 아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학과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결정한다.

1. 성적은 우수하나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
2.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학생
3. 학과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선발된 학생
4. 학과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중 장학금지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5. 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등 장학금 지급 사유가 충분한 학생

제8조(국가장학금 신청) ①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분위산정 및 성적기준 등에 대해 심사 승인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

②외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중 일부의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과장학금 지급지침 안내) ①매년 학과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②학과홈페이지 및 학과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2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